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317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7.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520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1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피고는 원고에게 34,601,3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C의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계계약이므로, 비록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에 '2,000만 원을 완불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채무 전액에 대한 집행력이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현실적으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소멸시키고 채권액 2,000만 원의 집행력 없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만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경계계약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그 의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경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2020. 3. 1.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새로이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를 경계계약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남현,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별지]

목 록

1. 경상북도 상주시 대 393㎡
2. 경상북도 상주시 지상 흙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
층 단독주택 99㎡
3. 경상북도 상주시 전 1425㎡
4. 경상북도 상주시 전 889㎡
5. 경상북도 상주시 답 1256㎡
6. 경상북도 상주시 전 2162㎡
7. 경상북도 상주시 답 387㎡
8. 경상북도 상주시 답 2869㎡
9. 경상북도 상주시 답 1597㎡
10. 경상북도 상주시 답 1151㎡
11. 경상북도 상주시 답 3.5㎡. 끝.

1) 원고의 2022.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도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1, 2, 11항 기재 부동산’의 오기로 본다.